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법정기구화를 위한 TFT 보고서

2011. 4.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발 간 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법정기구화를 위한 TFT 활동의 결과물로
TFT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TFT 활동기간 : 2010. 11. ~ 2011. 2.

2011. 4.

TFT 참여교수 : 박찬일(교수회 회장)
구자혁(교수회 수석부회장)
김백기(교수회 부회장)
백경구(평의원, 화학신소재학과)
최재식(평의원, 철학과)
고민수(평의원, 법학과)

작 성 자 : 김백기(교수회 부회장)

확인수정자 : 박찬일(교수회 회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찬일

목 차

1. 서 언	5쪽
2. TFT 활동내용	6쪽
3. 타 대학 현황분석	8쪽
4. TFT 활동결과	10쪽
1) 강릉원주대 학칙(101조, 102조, 103조) (안)	10쪽
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안)	11쪽
3)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안)	14쪽
4)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안)	17쪽
5. 결 언	18쪽

부 록

1) 현행 강릉원주대 학칙(101조, 102조, 103조)	19쪽
2)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20쪽
3)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	23쪽
4)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26쪽
5) 평의원회 회의록(16-9차, 16-11차)	28쪽
6)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록(1~6차)	30쪽
7) 강원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평의원회 규정	36쪽
8) 경북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회 규정	47쪽
9) 공주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회 규정	51쪽
10) 군산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59쪽
11) 목포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평의회 규정	60쪽
12) 부산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회 회칙	65쪽
13) 순천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회 운영세칙	75쪽
14) 안동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평의원회 규정	84쪽
15) 전남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평의원회 규정	88쪽
16) 창원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규정, 평의원회 운영세칙	93쪽
17) 충북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 교수회 규정	99쪽
18) 교수회/평의원회 학교별 지원 내역	106쪽

1. 서언

최근에 국립대 법인화, 교원 성과연봉제, 학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 이해당사자인 교수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의해 국립대 교수들의 지위와 신분과 위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들은 국교련을 중심으로 교원 성과연봉제와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폐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교련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립대학교들은 전체교수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교수회 또는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학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권한에 따라 대학 본부의 불합리한 대학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1987년 교수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1989년 교수회로 개명하였으나 16대 교수회 회장단이 선출된 지금까지 교수회는 학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기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므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고 대학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학칙으로 규정된 교수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총장이 의장인 교수회를 전체교수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교수회로 변모시키기 위한 학칙 개정과 제반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여 평의원의 의결에 따라 TFT를 구성하였다. TFT 구성은 평의원 중에서 교수회 회장단 경험이 있는 전 부회장 출신 2인과 법률자문을 위한 법학과 소속 평의원 1인과 현재 회장단 3인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하였다.

2. TFT 활동내용

- 1차 회의(2010년 11월 18일(목) 12시)
 - 교수회 법정화 TFT 구성완료(고민수 교수님도 참여하기로 함)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원회 자료 배포
 - 차기 회의 시 관련 자료 검토를 위한 위원별 역할분담 협의
- 2차 회의(2010년 12월 21일(화) 12시)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논의
 - 향후 우리대학의 교수회 법정화의 방향 및 방안에 관한 논의
 - 가. 평의원회 규정만을 수정하여 규정공포 요구하는 방안(총장에게 질의)
 - 나. 관련학칙 및 평의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공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 위원별 분담 학교 다음의 내용을 12월 31일까지 수집하기로 함.
 - (1) 교수회 및 평의원회에 대한 상호관계 및 학칙, 규정, 시행세칙의 포함여부
 - (2) 교수회 및 평의원회 회장단(의장단) 구성 : 총장 또는 직선 또는 간선여부
 - (3) 교수회 및 평의원회 권한과 주요역할, 임무 : 심의와 의결 여부 포함
 - (4)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 우리 학교 교수회 및 평의원회 운영 규정 수정안 작성
- 3차 회의(2011년 1월 11일(화) 12시)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해 검토한 결과, 우리대학의 교수회 법정화는 전체교수로부터 선출된 교수회장이 의장인 교수회 및 교수평의원회를 학칙에 명기하여 학칙기구화하기로 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학칙 개정 초안을 작성함.
 - 교수회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각 위원별로 안을 작성하여 1월 20일(목)까지 이메일로 교수회에 송부함.
 - 학칙, 교수회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심의, 의결, 거부권 등에 관한 내용은 위원별로 검토하여 안을 작성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4차 회의(2011년 1월 24일(월) 17시)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운영규정 초안을 작성함.
 - 교수회 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운영규정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각 위원은 초안을 검토하여 5차 회의 수정안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5차 회의(2011년 2월 8일(화) 12시)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학칙 개정 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 작성함.

2. TFT 활동내용

○ 6차 회의(2011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재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평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을 작성함.
- 작성된 학칙 수정안,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평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3월 초 평의회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

3. 타 대학 현황분석

○ 분석대상 : 거점국립대 5개교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지역중심국립대 6개교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 분석내용

- 교수회 및 평의원회에 대한 상호관계 및 학칙, 규정, 시행세칙의 포함여부
- 교수회 및 평의원회 회장단(의장단) 구성: 총장 또는 직선 또는 간선 여부
- 교수회 및 평의원회 권한과 주요역할, 임무: 심의와 의결 여부 포함

3. 타 대학 현황분석

○ 분석 결과(대학별 학칙기구화 관련)

	학칙기구화 여부	학칙기구화가 언제부터인지?
강원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
경북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1. 교수회 (1999.12.14) 2. 평의회
공주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	1. 교수회 (2004년) 2. 평의회 (2004년)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교수평의회 (○) - 운영규정 개정 중	1. 교수회 2. 교수평의회 (2010년)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1987년)
부산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	1. 교수회 (2005.9.1) 2. 평의회 (2005.9.1)
순천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대의기구, ○)	1. 교수회 (2005년) 2. 평의회 (2005년)
안동대학교 교수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2005년)
전남대학교 평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 2. 평의회 (1988.2.24)
창원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2. 평의회 (○)	1. 교수회(2003?) 2. 평의회 (2003?)
충북대학교 교수회	1. 교수회 (○) 2. 평의회 (학칙 제109조에 들어가 있으나, 대학평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1. 교수회 (2003년 11월 10일 규칙 공포) 2. 평의회

4. TFT 활동 결과

4개월간 6회에 걸친 TFT 회의 결과 우리대학의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학칙(안),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도출하였다.

1) 학칙 중 101조(교수회), 102조(단과대학 교수회), 103조(평의원회)에 관한 안

101조(교수회)

- 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학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학인의 권익신장과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102조(단과대학 교수회)

- ① 단과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103조(평의원회)

- ①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 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부와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 및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회장, 단과대학교수회 또는 전임교원 1/3 이상이 제출한 안건
 4. 교수회 및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선출직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6. 대학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학장후보자의 선출과 학장 불신임
 8. 평의원 선출과 불신임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반영여부를 교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과 교육 및 행정조직의 설치와 폐지
- ③ ①항 5, 6은 평의원회에, ①항 7, 8은 단과대학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대의기구)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본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따로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조(집행부의 구성) 본회의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강릉캠퍼스 1인, 원주캠퍼스 1인), 사무처장 2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집행부의 선출)

- ①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인원 과반수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④ 사무처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⑤ 집행부는 임기만료 30일전 차기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한 집행부선출위원회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수석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본회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집행부와 감사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

제9조(회장)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1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2조(회의)

-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

- ① 본회는 전체교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④ 사전에 위임장(별표1)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4. TFT 활동 결과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직원) 본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본회 집행부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평의원들의 평의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현 집행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강릉원주대학교 평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3조 및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① 평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과 단과대학의 교수회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수회 회장과 부회장은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된다.
- ③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수석평의원을 둔다.

제3조(평의원의 자격과 선출)

- ① 평의원의 자격은 본 대학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교무위원 및 교무위원을 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 ②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권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단과대학별 평의원 수는 별표1과 같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4조(직무)

- ① 본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출직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2. 대학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수회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
-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반영여부를 교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과 교육 및 행정 조직의 설치와 폐지와 관한 사항
 4. 기타 위 호와 유사한 사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3호 내지 4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5조(조사권 등) 본회는 필요 시 특정업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집행부서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총장(관계부장 포함)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석 및 답변 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해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대

4. TFT 활동 결과

리인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 ① 본회는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교무학사위원회
 - 2. 재정위원회
 - 3. 기획발전위원회
- ②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

- ① 주요과제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안건제출) 회장, 단과대학교수회, 재적교원 30인 이상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 ① 회장,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본회의의 소집공고는 회의일 5일전에 하여야 한다.
- ③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②항의 소집기간에 관계없이 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사 및 의결)

- ①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의결정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재적회원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표결 방법)

-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회장의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② 표결을 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으로 하여금 거수토록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회장의 제의, 또는 회원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뜻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회장은 의결 결과를 7일 이내에 안건의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제16조(회의록)

- ① 회장은 다음사항이 기재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 및 결석의원
 3. 출석참고인 직, 성명
 4. 제반보고사항
 5. 안건토의내용
 - 1)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제목
 - 2) 토의의 주요내용
 6. 표결결과와 의결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회의록에는 회장, 담당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 ③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에 회람하여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회장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정정한다.
- ④ 이 대학교의 교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현 회장, 부회장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단과대학별 평의원 수

단과대학 전임교원 수	1~14명	15~24명	25~34명	35~44명	45명 이상
평의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4)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2조 및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장후보자의 선출과 학장의 불신임
- ② 평의원의 선출과 불신임
- ③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
- ④ 단과대학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감사에 관한 사항
- ⑤ 학장, 단과대학 평의원의 3분의 2이상, 단과대학 교수의 5분의 1이상이 제출한 사항

제3조(평의원)

- ① 단과대학 평의원은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수석평의원을 둔다.
- ③ 단과대학 수석평의원이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이 된다.

제4조(소집)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학장, 평의원의 3분의 2, 또는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 교수회는 회의일 3일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평의원 및 학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의결정족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재적회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⑥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1주일 이상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현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5. 결론

이번 TFT의 최종 목표는 전체교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전체교수에 의해 선출된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향후 임명직 학장에 대비한 단과대학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우리대학의 실정에 맞는 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록에 첨부한 대학의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4개월여의 기간을 통하여 TFT 목표에 부합하는 안을 작성하였다. 이 TFT에서 작성한 안은 평의원회의 의견 수렴, 수정과 의결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교수회 법정화 추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안을 전자메일을 통하여 전체교수에게 공지하였고, 4월 6일 치러진 차기총장선거에 입후보한 5인의 후보자는 모두 교수회 법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수회는 총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전원에게 최종안을 송부하고 후보자의 견해를 밝히도록 요청하였고 선거 후 현 총장과 차기 총장예정자에게 동 사항을 전달하였다.

향후 교수회 법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 총장 또는 대학당국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현 총장 임기 중 교수회 법정화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장취임 즉시 공약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TFT 결과가 전체교수의 숙원 사업인 교수회의 법정화를 실현하여 교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부록 1) 현행 강릉원주대 학칙(101조, 102조, 103조)

제13장 교수회

제101조(전체교수회)

-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둔다.
- ② 전체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전체교수회는 휴직자, 출장자 및 기타 공무수행자 등을 제외한 재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체교수회의가 2회에 걸쳐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전체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
 2. 재직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평의원회, 교무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 ① 각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소속대학장이 의장이 된다.
-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장이 소집한다. 다만, 소속대학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재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과(부)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학칙의 개정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2.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5.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소속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3조(평의원회)

-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록 2)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본회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학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대학인의 권익신장과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제4조(회의 구성) 본회는 전체교수회, 평의원회, 단과대학 교수회로 구성하며 평의원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인
4. 감사 1인
5. 간사 2인
6. 서기 1인

제6조(임원의 선출과 자격)

- ①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에 각 1인을 두며, 강릉캠퍼스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 ③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회원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④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⑤ 간사와 서기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⑥ 임원의 피선거권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교원으로 한다.
- ⑦ 임원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퇴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 ⑤ 서기는 회의록의 정리, 보관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권한)

- ①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총장후보자의 선출 및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총장, 회장 기타 교수가 부의한 안건.
 - 4. 교수회 및 평의원회,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총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 ①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총장, 평의원회 또는 교수회 구성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장이 요구한 임시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 ⑤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안건은 회의 소집 공고 시 상정된 것에 한한다.

제10조(성원 및 의결)

- ① 교수회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 및 총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④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불참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 ⑤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의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사무직원) 교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

- ① 교수회의 재정은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예산,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한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평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대의기구로서 평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교수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단과대학의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평의원의 자격과 선출)

- ① 평의원의 피선거권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권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 ③ 평의원의 수는 단과대학 단위로 회원수의 10%로 하되 끝 수는 사사오입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4조(권한 및 기능)

- ① 본회는 총장선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교수회 총회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총장 및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면동의 및 해임건의
 3.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수회에서 위임하거나 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본회는 필요 시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집행부서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총장(관계부서장 포함)은 평의원에 출석하거나 서류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총장(관계부서장 포함)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교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간사, 서기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여부와 기타 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소속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소속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특별기구)

-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소속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삭제

제8조(전문위원)

- ① 주요과제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단, 특별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은 특별기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본회의 소집)

- ① 총장, 운영위원회, 평의원 3분의 1이상, 재적 교원 5분의 1이상의 요구 시 회장은 본 회의를 소집한다.
- ② 본회의의 소집공고는 회의일 5일전에 하여야 한다.
- ③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②의 소집기간에 관계없이 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상정) 삭제

제11조(본회의 심의 의결)

- ① 본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공고된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기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 ③ 의결정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재적위원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투표를 할 수 있다.
- ⑤ 총장은 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은 회장이 10일 이내에 본 회의에 상정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 ⑦ 총장이 재의결 결과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교수회에 상정한다.

제12조(본회의 표결)

-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회장의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② 표결을 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으로 하여금 거수토록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회장의 제의, 또는 회원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뜻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회장은 의결 결과를 3일 이내에 안건의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 ① 회장은 다음사항이 기재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가. 회의일시
 - 나. 출석 및 결석의원
 - 다. 출석참고인 직, 성명
 - 라. 제반보고사항
 - 마. 안건토의내용
 - 1)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제목
 - 2) 토의의 주요내용
 - 바. 표결결과와 의결사항
 - 사.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회의록에는 회장, 서기가 서명한다.
- ③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에 회람하여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회장은 평의원회의의 결의로 정정한다.
- ④ 이 대학교의 교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현행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소집)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 대학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은 수석평의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학장, 평의원의 3분의 2, 또는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 교수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 ⑤ 교무위원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⑥ 학장이 요구한 임시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 ⑦ 단과대학 교수회는 회의일 3일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성원 및 의결)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평의원 및 학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④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불참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 ⑤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1주일 이상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장후보자의 선출과 학장의 불신임
2. 평의원의 선출과 불신임
3.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
4. 단과대학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감사에 관한 사항
5. 학장, 단과대학 평의원의 3분의 2이상, 단과대학 교수의 5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석평의원)

- ① 단과대학 평의원의 자격과 선출은 강릉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회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수석평의원을 둔다.
- ③ 수석평의원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회의록

제 목	제16-9차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 오후 5시
장 소	본부 1층 회의실(113호)
안건 및 토의내용	1. 등록 : 참석 10명, 위임 16명, 불참 14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40명중 26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가. 교수회 법정화 TFT 구성 : 교수회장단에 위임하여 2011년 2월까지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할 예정임. 나. 보직교수 임명 동의 시행안 개정 1) 동의 대상자는 보직교수 임명 예정일 2주전에 약력 및 소견서를 교수회에 송부한다. 2) 동의 대상자는 임명 동의안 처리 시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타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황윤진, 임동일, 김홍철, 백경구, 손영창, 김동욱, 박호원
위임자	박영주(교수회장), 최재식(구자혁), 김병곤(교수회), 이규송(백경구), 정동화(교수회), 조길석(교수회장), 전충(교수회장단), 김종오(김동욱), 황도영(교수회), 김철(박호원), 조영경(박호원), 김영준(박호원), 엄소희(김백기), 이형원(박찬일), 김봉석(교수회), 김환석(김백기)
불참자	이철, 김창진, 홍영희, 고민수, 민남식, 반선섭, 김학기, 신현호, 정우진, 홍은영, 최윤정, 박수자, 이재길, 조성국

기록 : 구자혁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16-11차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11년 3월 9일(수) 오후 5시
장 소	본부 1층 회의실(113호)
안건 및 토의 내용	1. 등록 : 참석 14명, 위임 8명, 불참 17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39명중 22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가. 교수회 법정화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건- 다음 일부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됨. 개정사항 : (1) 교수회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 2조 ③ ①항 5, 6은 평의원회에, ① 7, 8은 제 16조 ④ 평의원들의 평의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단과대학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5조 ⑤ 의결정족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 자구 수정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최종안은 평의원들에게 전송 한다. 나.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키는 방안 논의. 총장후보 등록 마감일(3월 24일) 이후 - 등록자에게 공문(서약서 포함) 발송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공문접수함.(3월 25일)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발표토록 함. (3월 29일, 1차 공개토론일/강릉캠퍼스) 공문 또는 공개토론에서 의견을 피력치 않을 시에는 공개질의 함. (3월 30일) 교수회는 수신공문 및 공개토론회 발표내용과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전체교수에게 공지함. (선거일 4월 6일 이전) 다. 수업평가개선 설문문항 변경(안) 건 - 다음 주 월요일(3월 14일)까지 의견 제출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반선섭, 임동일, 김병곤, 백경구, 이규송, 노정미, 김동욱, 정우진, 하연수, 박호원, 김철
위임자	민남식(반선섭), 황윤진(반선섭), 김종오(김동욱), 조영경(박호원), 김영준(박호원), 홍은영(교수회장), 이재길(교수회장), 김봉석(교수회장)
불참자	이철, 김창진, 홍영희, 최재식, 고민수, 김홍철, 박용진, 진형주, 김정호, 신현호, 전충, 최윤정, 엄소희, 박수자, 이형원, 김환석, 조성국

기록 : 구자혁

확인 : 박찬일

부록 6)

회의록

제 목	제1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12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내용	1. 등록 : 5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5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교수회 법정화 TFT 구성완료(고민수 교수님도 참여하기로 함)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원회 자료 배포 - 차기 회의 시 관련 자료 검토를 위한 위원별 역할분담 협의 * 위원별 검토 대학 자료 1) 최재식 교수 : 강원대, 공주대 2) 백경구 교수 : 경북대, 군산대 3) 구자혁 교수 : 목포대, 부산대 4) 김백기 교수 :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5) 박찬일 교수 : 창원대, 충북대 - 2차 회의 일정 논의(12월 21일 12:00부터)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최재식, 백경구
위임자	
불참자	고민수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2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2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 내용	1. 등록 : 6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6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논의 - 향후 우리대학의 교수회 법정화의 방향 및 방안에 관한 논의 가. 평의회 규정만을 수정하여 규정공포 요구하는 방안(총장에게 질의) 나. 관련학칙 및 평의회 규정을 수정하여 공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 3차 회의 일정 논의(2011년 1월 11일 12:00부터) - 위원별 분담 학교 다음의 내용을 12월 31일까지 수집하기로 함 (1) 교수회 및 평의회에 대한 상호관계 및 학칙, 규정, 시행세칙의 포함여부 (2) 교수회 및 평의회 회장단(의장단) 구성 : 총장 또는 직선 또는 간선여부 (3) 교수회 및 평의회 권한과 주요역할, 임무 : 심의와 의결 여부 포함 (4)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 우리 학교 교수회 및 평의회 운영 규정 수정안 작성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최재식, 백경구, 고민수
위임자	
불참자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3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1년 1월 11일(화) 12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내용	1. 등록 : 5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5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타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해 검토한 결과, 우리대학의 교수회 법정화는 전체교수로부터 선출된 교수회장이 의장인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를 학칙에 명기하여 학칙기구화하기로 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학칙 개정 초안을 작성함. - 교수회운영규정 및 평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각 위원별로 안을 작성하여 1월 20일(목)까지 이메일로 교수회에 송부함. - 학칙, 교수회운영규정, 평의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심의, 의결, 거부권 등에 관한 내용은 위원별로 검토하여 안을 작성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4차 회의 일정 논의(2011년 1월 24일 17:00부터)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최재식, 백경구
위임자	
불참자	고민수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4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17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내용	1. 등록 : 4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4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운영규정 초안을 작성함. - 교수회 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운영규정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각 위원은 초안을 검토하여 5차 회의 수정안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5차 회의 일정 논의(2011년 2월 8일 12:00부터)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백경구
위임자	
불참자	최재식, 고민수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5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1년 2월 8일(화) 12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 내용	1. 등록 : 5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5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학칙 개정 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 작성함. - 6차 회의 일정 논의(2011년 2월 9일 10:00부터)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고민수, 백경구
위임자	
불참자	최재식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회의록

제 목	제6차 교수회 법정화 TFT 회의
일 시	2011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교수회 사무실
안건 및 토의 내용	1. 등록 : 5명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과반수(6명중 5명)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 선언 3. 논의사항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재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을 작성함. - 교수회 법정화를 위한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수정안을 작성함 - 작성된 학칙 수정안,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단과대학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3월 초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 4. 폐회
참석자	박찬일, 구자혁, 김백기, 고민수, 백경구
위임자	
불참자	최재식

기록 : 김백기

확인 : 박찬일

부록 7)

강원대학교 학칙

제4절 교수회와 평의회

제18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의 전임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체교수회를 둔다.
- ② 이 대학교의 각 캠퍼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로 해당 캠퍼스 소속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는 캠퍼스별 교수회를 둔다.
- ③ 이 대학교의 각 대학(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부)별로 해당 대학(부) 소속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부)별 교수회를 둔다.
- ④ 이 대학교의 각 전문대학원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전문대학원에 전문대학원별 교수회를 둔다.(신설 2009. 2. 27)

제19조(전체교수회)

-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총장은 전체교수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의 재적전임교수에는 개회기일 현재 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캠퍼스별 교수회)

- ① 캠퍼스별 교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총장(삼척캠퍼스는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전임교수 5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캠퍼스별 교수회는 총장(삼척캠퍼스는 부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캠퍼스별 교수회는 총장(삼척캠퍼스는 부총장)의 대학운영보고 및 평의원의장의 활동보고를 청취하고, 발의된 안건을 논의한다.
- ⑤ 의결은 재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2항 및 제4항의 재적전임교수에는 개회기일 현재 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⑦ 캠퍼스별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제20조(대학(부)별 교수회)

- ① 대학(부)별 교수회(이하 이 조에서 “교수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학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전임교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교수회는 학(부)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교수회는 해당 대학(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학(부)장의 활동보고를 청취하며, 재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4.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평의원의 추천
 - 6. 학(부)장의 추천
 - 7. 학부(학과군,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 8. 기타 학(부)장이 부의 하거나 또는 전임교수 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부)의 각 학부(학과군, 학과)장으로 구성된 회의로서 교수회에 갈음할 수 있다.
- ⑦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부)별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전문대학원 교수회)

- ①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의원의 추천
 - 2. 전문대학원장의 추천
 - 3.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기타 전문대학원장이 부의하거나 또는 전임교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09. 2. 27)

제21조(평의원회)

-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평의원회를 두고, 캠퍼스별로 각각 평의원회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의원회는 평교수, 보직교수, 교육관계인사 등 7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평교수 평의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본부 보직자 중에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까지로 한다.
- ④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캠퍼스별 각 1인)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평의원회 및 춘천캠퍼스 분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춘천캠퍼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또는 의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삼척캠퍼스 부의장은 삼척캠퍼스 분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22조(평의원회 회의)

-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평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분회의 회의는 의장(삼척캠퍼스의 경우는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삼척캠퍼스의 경우는 총장 또는 부총장) 또는 당해 분회 소속 평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삼척캠퍼스의 경우는 부의장)이 소집한다.

제23조(평의원회 심의사항)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부), 대학원, 학부(학과군, 학과) 또는 부속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간접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5.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원 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8.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의장·평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분회의 심의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평의원회 분과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정)

①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분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강 원 대 학 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에 근거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 학부(대학), 독립학부 등의 교수회가 소속전임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선출직평의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평의원(처장, 국장, 행정본부장)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70인 이내로 한다.

제3조(평의원의 선출과 자격) (평의원선출과 자격)

- ① 선출직평의원은 단과대학, 학부(대학), 독립학부 등의 교수회에서 평의원임기 만료 40일전에 선출한다. (제893호)
- ② 각 단과대학, 학부(대학), 독립학부의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평의원의 수는 재적교수(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제893호)
 1. 재적교수의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2. 재적교수의 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3. 재적교수의 수가 40인 이상 60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4. 재적교수의 수가 60인 이상 80인 미만인 경우에는 4인
 5. 재적교수의 수가 8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6. 재적교수의 수가 10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에는 6인(제893호)
 7. 재적교수의 수가 120인 이상인 경우에는 7인(제893호)
- ③ 선출직평의원이 되는 자격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에게 있다. 다만, 교무위원 또는 부처장, 홍보실장, 국제협력부장, 서울본부 장, 대학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이하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위원”이라 한다)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 ④ 휴직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중인 자는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평의원으로로서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의 인사발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개시됨과 동시에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선출직 평의원이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정당한 이유는 14일 이내에 소명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 의장은 즉시 해당교수회에 대하여 후임자의 선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부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추천캠퍼스 1인, 삼척캠퍼스 1인)을 두되, 선출직평의원 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제893호)
- ②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분리하여 실시하되, 입후보절차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 선거는 각 캠퍼스

퍼스별로 실시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부여하거나 봉사계획서 등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다.(제 893호)

- ③ 제1차 투표에서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1순위득표자만을 대상으로, 1순위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1순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의장은 평의회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교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각 캠퍼스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춘천캠퍼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893호)
- ⑤ 평의회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경우나 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평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선출절차를 주재하여야 한다.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선출절차를 주재함에 국한되며, 의장선출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때에는 그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⑦ 평의회회의 활동지원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실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되, 의장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 ⑧ 캠퍼스별로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이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평의회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제 893호)

제5조(임기)

- ① 선출직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당연직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 ④ 선출직평의원이 교무위원 또는 부처장, 홍보실장, 국제협력부장, 서울본부 장, TQM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교수직 또는 평의원직을 사임한 경우 혹은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교수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체회의)

- ① 평의회회의 전체회의는 총장·의장·평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 10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 전체회의는 매 학기초 및 학기말에 소집한다.
- ③ 전체회의의 일정과 안건은 소집요구자의 요구에 의하되,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 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전체회의일 3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모든 의원에게 서면·이메일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과 안건명만을 통지할 수 있다.

- ⑤ 전체회의에서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긴급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체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개회된 후 안건의 표결시에 재석한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사항)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3호)
1.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대학원, 학부(학과군, 학과) 또는 부속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간접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5.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8.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9. 대학원장 및 처·실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제893호)
 10. 기타 총장·의장·평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제893호)
- ②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의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완결된다.

제8조의2(총장선거관리)

- ① 평의원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주관한다.
 ② 평의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강원대학 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 제16조에 따른 감시와 제재의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의 불법선거감시와 제재를 위하여 평의원회에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를 둔다. 다만,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평의원회에 둔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의 직무는 종료되며, 그 위원회에 즉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전체회의의 심의절차)

-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분과위원회가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안자(부서)가 원안의 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안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부서)의 제안설명과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정안발의 또는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긴급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원 대표자의 제안설명만을 청취한다.

- ③ 전체회의에서는 의원 5인 이상 또는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해당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상정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심의하여야 하며,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원안을 심의할 수 있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원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긴급수정안을 발의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긴급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긴급수정안을 먼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긴급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원안 및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 ⑦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한다.
- ⑧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선포후에는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토론의 재개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⑨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다. 다만,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투표를 개시할 당시에 회의장에 재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의 투개표관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⑩ 의원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⑪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⑫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평의원회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의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총장의 재심의 요구)

- ① 총장이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붙여서 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평의원회는 총장의 서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재통보 하여야 한다.
- ③ 평의원회가 당초의 의결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와 총장이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때에 이를 찬성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④ 총장이 제2항에 의하여 재통보된 심의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학교 전체교수회의를 소집·개회하여야 한다. 대학교 전체교수회의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 중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안건은 그 결정대로 확정된다.

제12조(총장의 평의원회 출석)

- ①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평의원회 출석)

- ① 전체회의에서 의원 5인 이상 또는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4조(업무의 평가)

평의원회는 대학 행정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출석, 관련 서류 등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 ① 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교무연구?학생입학?기획협력?재무?교권복지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모든 의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모든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모든 의원은 모든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고 분과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발언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평의원회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앞으로 제출될 안건을 사전심의하여 전체회의에 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소관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소관분과위원회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는 심의를 스스로 할 수 있다.

1. 교무연구분과위원회

- 가. 학칙의 제정과 개정
- 나.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 다. 교육과정의 편성원칙
- 라. 교수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교무?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입학분과위원회

- 가.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 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 다. 장학금 지급원칙
- 라. 기타 학생·입학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획협력분과위원회

- 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 나. 대학, 학부(학과군, 학과)의 설치와 폐지, 학부(학과군, 학과) 정원의 조정
- 다.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라. 홍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기획·대외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 4. 재무분과위원회
 - 가.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
- 5. 교권복지분과위원회
 - 가. 교권에 관한 사항
 - 나.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의장?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전임교수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심의요구를 하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부의장·사무총장·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이 의원 가운데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하는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은 15인 이내로 한다.(제893호)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의장이 겸임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소관심의사항이 아닌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 1. 평의원회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이 대학교의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 3. 이 대학교와 평의원회의 각종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4. 평의원회의 각종 행사 및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 5. 총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 6. 대학원장 및 처?실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제893호)
 - 7. 의장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한 보좌 및 자문
 - 8. 각종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이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분과위원회의 소관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의장?운영위원회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또는 전임교수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심의요구를 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각종 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의 의결로 각종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조직과 기능은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 또는 의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 및 결과의 공개)

- ① 전체회의의 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로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학생·외부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방청인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19조(세칙)

- ① 평의원회는 학칙 및 이 규정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평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고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②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20조(규정총결의 보충)

이 규정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1989. 3. 14 규칙 제2659호)

- ① 이 규정은 '88. 6. 24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의결전에 결의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2. 2. 17 규칙 제3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26 규칙 제3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3 규칙 제3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1 규칙 제5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칙 제672호)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부 칙 (2002. 4. 22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2년 4월 15일 현재 발전기획단 전문위원으로 재임중인 선출직 평의원은 제3조 제3항 단서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에 의한 임기말까지 평의원직을 보유한다.

부 칙 (2004. 3. 29 규칙 제8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8 규칙 제859호)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규칙 제893호)

이 규정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규칙 제92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8)

경북대학교 학칙

제 4 절 교수회·학장회 및 위원회

제9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수회의장, 부의장 및 각 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둔다.
- ③ 다음 사항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
 - 1.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2. 예산과 결산
 - 3. 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지원단장, 입학관리본부장 및 기초교육원장의 임명<개정 2008. 2. 29, 2009. 2. 27, 2009. 11. 23, 2010. 9. 30>
 - 4. 교원업적평가기준, 입학 전형기준 등 학내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북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단과대학교수회)

- ① 단과대학에 교수회에 준하는 구성과 기능을 하는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 ② 단과대학교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북대학교 교수회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각 단과대학교수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 2. 23>

제11조(평의회) <삭제>

경북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정 2001. 3.24 규정 제1024호
개정 2002. 8. 8 규정 제1086호
개정 2005. 2.16 규정 제1231호
개정 2005.11. 9 규정 제1270호
개정 2009. 4.21 규정 제15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학칙 제9조에 의거하여 경북대학교교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본 회는 우리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본 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2인, 사무처장 1인 및 사무부처장 약간명을 둔다.

제3조(임원 등의 선임)

- ① 의장과 부의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과 부처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 ② 학장회의 구성원과 지원시설·부속시설의 장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 2. 16>
- ③ 임원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임원 등의 역할)

- ① 의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평의원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 교수들에게 서면(e-mail 포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무처장과 부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임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등)

- 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은 임기개시일 3주전까지 해야 한다.<개정 2005. 2. 16>
- ② 의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부의장, 감사의 궐위 시에는 평의회의 의결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총회는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을 받은 의장은 궐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총회와 서면투표)

- ① 총회는 평의회, 총장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평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총회 대신 서면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실제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회원이란 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 ④ 서면투표의 경우에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총장후보자 추천)

- ① 총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 ②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평의회의 구성)

- ① 평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및 단과대학에 준하는 독립학부(이하 "독립학부"라 칭한다)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1. 09, 2009. 4. 21>
- ② 학장회의 구성원과 지원시설·부속시설의 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 2.16> 평의원의 수는 각 대학, 전문대학원 및 독립학부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30명 미만은 2인, 100명 이상은 4인, 나머지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대학, 전문대학원 및 독립학부 당 전임교원의 수는 평의원 선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11. 09, 2009. 4.21>
- ④ 평의회는 본 회 의장, 총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⑤ 평의회는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원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평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평의회의 업무)

- ① 다음 사항은 평의회를 거쳐야 한다.
 1.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
 3. 대학원장 및 처장의 임명
 4. 입학전형기준, 교수업적평가 기준 등 학내 중요정책
- ② 평의회는 특별히 전체회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안건은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 ③ 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학내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내 구성원은 평의회에 고충을 진정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평의회의 업무 처리)

- ① 평의회는 업무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의장단이 위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평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③ 평의회는 제 규정 중 경미한 내용의 개정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의장단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임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의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평의회 또는 평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평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수회와 총장의 합의 노력) 교수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

- ①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14조(일반관례 준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1024호)

본 회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86호)

제1조(경과조치) 제8조 제3항의 평의원 수는 차기 임기 시작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평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임기만료일까지 평의원이 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2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1. 규정 제15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9)

공주대학교 학칙

제8장 교수회

제26(교수회)

- ①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공주대학교교수회규정

(2003. 3. 1 규정 제401호)

(2004. 12. 24 규정 제4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6조에 의한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및 조직) 교수회는 대학의 주요 학사에 관한 심의기구이며, 교수회에는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두고, 단과대학에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제2장 교 수 회

제3조(권한)

- ① 교수회는 아래 권한을 가진다.
 1.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2. 교수회 임원선출
 3. 총장, 교수회 회장, 평의원회, 교수회원 10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토의
-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감사 2인
4. 사무국장 1인
5. 간사 5명 이내

제5조(임원의 자격)

- ① 임원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의 회원으로 하되, 사무국장과 간사는 조교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학부(과)장을 제외한 보직자는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2차 투표에 붙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다만, 공무출장 중인 자나 휴직자는 재적회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위임장은 회의의 성립요건으로만 인정하고 선출을 위한 출석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부회장과 감사는 교수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연장자로 한다.

-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 ① 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회장직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그 외의 직은 보선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평의원회에서 교수회 임시회장단을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① 회장은 교수회와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평의원회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교수회와 평의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 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 ① 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년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단과대학 교수회의 요청이 있을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교수회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한다.
 ② 교수회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공무출장 중인 자나 휴직자는 재적회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위임장은 회의의 성립요건으로만 인정하고 의결을 위한 출석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총회대신 서면 투표(홍페이지 및 e-mail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서면투표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수회사무국) 교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수회사무국을 둔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제13조(규정개정) 본 교수회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교수회 재적회원 1/30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하고, 교수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단과대학 교수회

제14조(구성 및 조직)

-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 ②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은 단과대학 교수회를 대표한다.
- ③ 단과대학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 ① 단과대학 교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장 임용후보자의 선출
 2. 평의원의 선출
 3. 제17조에 의한 회의소집사유에 관한 사항
- ② 학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회장선출)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회의의 소집)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단과대학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단과대학 평의원 1/20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단과대학 재적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4장 평의원회

제1절 구성 및 기능

제18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평의원회의 기능과 총장의 재심 청구권)

-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학장 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4. 별표1의 주요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장, 본부처장, 산학협력단장 임명동의안

8.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9. 총장, 교수회 회장, 평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안
 10. 교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
- ② 총장은 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평의원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 의 원

제20조(평의원의 자격) 평의원의 자격은 본 대학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 한다. 단, 학부(과)장을 제외한 보직자는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평의원회의 선출 및 단과대학별 배정)

-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평의원 수는 각 단과대학마다 전임교수 50인까지는 3인을 기본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추가 배정한다. 단, 선출직 임원인 의장, 부의장, 감사는 단과대학 평의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2조(평의원회의 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개선 및 보선)

- ①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임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절 임 원

제24조(임원) 평의원회 임원은 교수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25조(임원의 임무)

-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평의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④ 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절 회의 및 운영

제26조(회의종류와 소집)

-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평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7조(회의 성립 및 의결) 평의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업무위임 등)

- ① 평의원회는 업무를 각 위원회(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임원진이 위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평의원회는 제 규정 중 부수적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임원진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임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의장 또는 각 위원장은 평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제출 등 요구권)

- ① 의장은 안전상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요청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의무) 교수회 회장은 평의원회의 활동 내용을 교수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고 교수회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세부운영규정) 평의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위 원 회

제32조(분과위원회)

- ① 평의원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기획발전분과위원회
 - 2. 행정분과위원회
 - 3. 교육연구분과위원회
 - 4. 재정복지분과위원회
- ② 각 위원회에는 필요시 평의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위원회) 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이 아닌 회원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 ①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5장 재 정

제35조(재정)

-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③ 교수회의 예산과 결산은 평의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④ 교수회의 임원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03. 3. 1. 제4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제448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주대학교 교수회 및 평의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주요규정

순서	규정명	순서	규정명
1	대학원학위수여규정	11	대학원학사운영규정
2	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12	학사운영규정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	13	국비해외파견교수선발규정
4	법제심의위원회규정	14	학술연구비관리규정
5	기획위원회규정	15	교수연구년및안식년규정
6	예산집행심의회의운영규정	16	강사료지급규정
7	공간조정위원회규정	17	교수업적관리평가에대한규정
8	실험실습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규정	18	학생생활관규정
9	교수보직관리규정	19	교수아파트관리규정
10	교원등인사에관한규정		

※ 다만, 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규정 중 제안 부처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개정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규정 및 평의원 재적 4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교수평의회의 심의대상이 된다.

부록 10)

군산대학교 학칙

제6절 교수회(개정 2010. 7. 1)

제16조 (교수회)

- ① 본 대학교에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개정 2010. 7. 1)
- 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7. 1)
- ③ 전체교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7. 1)
- ④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10. 7. 1)
- ⑤ 단과대학 교수회는 학장 또는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장은 학장이 된다.(개정 2010. 7. 1)
- ⑥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7. 1)
-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7. 1)
 1. 학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삭제(2010. 7. 1)
 6.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 7. 1)
 7. 그 밖에 총장, 학장 또는 교수평의회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 7. 1)
- ⑧ 처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부록 11)

목 포 대 학 교 학 칙

제5절 교수회와 위원회

제20조(교수회)

-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대학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
- 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를 두며, 그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 ④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재적교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기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수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⑤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단과대학교수회)

- ① 각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대학에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의장이 된다.
-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단과대학교수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건의
 2. 학생지도,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정 1987. 09. 03. 개정 1989. 04. 27.
개정 1990. 03. 01. 개정 1997. 03. 20.
개정 2002. 02. 26. 개정 2003. 03. 04.
개정 2006. 05. 08. 개정 2007. 04. 16.
개정 2008. 03. 20. 개정 2010. 01. 18.

제1조(목적)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목포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둔다.

제2조(교수회와의 관계) 교수회는 대학 운영의 주체이며 교수평의회는 교수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구이다.

제3조(구성) 교수평의회는 각 단과대학교수회에서 선출된 3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평의원)

- ① 평의원의 선거권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의 피선거권자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학칙에 근거한 주요 보직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③ 평의원은 단과대학 단위로 전임 교수 15인당 1인을 선출한다.
- ④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에 배정된 인원수를 연기명하는 직접 ; 비밀투표에 의해 종다수 득표제로 선출한다.
- 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로 피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조직)

- ① 교수평의회에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교수평의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교수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회의록을 정리하고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 ⑤ 교수평의회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원을 둔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에서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을 구성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권한 및 기능)

- ① 교수평의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교수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전임강사 이상)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안에 대한 동의, 예산 집행 감사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대학 조직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교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교수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수회에서 위임하거나 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수평의회는 필요시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권을 가지며, 대학의 집행부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교수평의회는 심의·의결 사항 또는 처리 사항을 교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총장(관계 부서장 포함)은 교수평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류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교수평의회는 총장(관계 부서장 포함)의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평의회내에 기획분과위원회, 교무분과위원회, 학생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9조(발의) 의안의 발의는 총장, 교수 20인 이상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하며, 의장은 곧 소관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교수평의회 의결은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전임 교수의 임명을 제외한 면직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이의 제기에 의한 재의결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총장의 이의 제기)

① 총장은 교수평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수평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30일 이내에 교수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교수평의회에 회부해야 한다.

③ 총장은 교수평의회 의결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제12조(지위)

- ① 평의원은 회의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② 의장단(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의 업무수행이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할 경우,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의결로 소속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 ④ 평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교수평의회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교수평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⑤ 평의원은 제4조 제2항의 직에 임명된 경우, 혹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⑥ 평의원은 교수평의회에의 의결 없이 사퇴할 수 없다.

제13조(예산) 교수평의회는 예산은 본 대학교 예산에 편성한다.

제14조(세칙) 교수평의회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장, 교수20인 이상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교수평의회에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 ① 교수평의회는 해산은 교수회의 의결을 요한다.
- ② 교수평의회는 해산 발의는 총장, 평의회의장 또는 교수 20인 이상이 사유를 명기한 서면으로 교수회에 제출한다.
- ③ 해산 후 구성되는 평의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에 의한 평의회는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성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평의회는 1990년 3월 9일까지 구성한다.
3. 제16조(해산)는 199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제10대 교수평의회는 제16조 제3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제13대 교수평의회는 제16조 제3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③항에 대해서는 제 14대 교수평의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0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의 학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2)

부산대학교 학칙

제6절 대학평의위원회, 교수회 및 교수회의

제29조(대학평의위원회)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제30조제2항의 교수회를 구성하는 교수회 평의원, 직원 대표 5명, 총동문화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 5명, 학생 대표 3명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의장은 제30조제3항의 교수회 회장으로 한다.
- ④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과 결산
 2. 대학(원), 학과(부)나 전공의 설치와 폐지
 3. 처·국, 대학(원) 행정실 및 지원·부속시설의 설치나 폐지
다만, 산학협력단 소관 지원·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대학 장기발전계획
 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7. 의장이나 재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⑤ 대학평의위원회는 제2항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⑥ 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교수회)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성한다.
- ③ 교수회에 교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회를 둔다.
-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3.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회장과 평의원의 선출 및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회는 부산대학교 교수회라 칭하고 본부는 부산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연구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부산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다만 교환교수, 명예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 정규 교수는 제외한다.

제4조(조직) 본회는 전체교수회, 단과대학 교수회 및 평의회로 구성한다.

제 2 장 전 체 교 수 회

제5조(구성) 전체교수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한) 전체교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의 선임 및 불신임 결의
- ②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
- ③ 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
- ④ 본회의 회칙 개정 및 본회의 예산 결산의 의결
- ⑤ 평의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
- ⑥ 총장 선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⑦ 교수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전체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3인
- ③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피선거권)

- ① 회장은 평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출당시 본교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교수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② 감사는 평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출당시 본교 재직 5년 이상의 조교수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③ 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9조(회장의 선출)

-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에 입후

보 등록을 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전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그 선출은 전체교수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장선출규정은 평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회장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의 개선 및 보선)

- 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의 임기중 사임,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2조(부회장의 선출)

- ① 부회장은 평의회에서 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부의장이 겸임한다.
- ②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부회장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구두 추천에 의한 후보자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2인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① 회장은 전체교수회와 평의회를 대표하고 전체교수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되며 전체교수회와 평의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전체교수회 및 평의회의 회계감사를 한다.

제15조(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3. 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 4.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5. 단과대학 교수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16조(정족수)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①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①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는 전체교수회에서 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총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회장 및 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전체교수회 회장 및 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단 과 대 학 교 수 회

제19조(구성)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대학 소속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제20조(권한) 단과대학 교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학장의 선출 및 해임

② 평의원의 선출

③ 학칙 제88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의결

④ 교수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제21조(회장)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은 학장이 이를 겸한다.

제22조(학장 및 평의원 선출) 단과대학 학장 및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단과대학 평의원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4 장 평 의 회

제 1 절 평 의 원

제24조(지위 및 구성)

① 평의회는 전체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본회의 회장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회장과 평의원은 대학평의회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대학평의원을 겸한다.

제25조(선출)

① 평의원은 회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의 평의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재적 회원 30인 미만에서는 1인
2. 재적 회원 30인 이상 70인 미만에서는 2인
3. 재적 회원 70인 이상 120인 미만에서는 3인
4. 재적 회원 120인 이상 180인 미만에서는 4인
5. 재적 회원 180인 이상에서는 5인
- ③ 제2항에 소속하지 않는 회원 중에서 평의원 1인을 선출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평의원 외에 교수회장의 추천과 평의회의 동의로 5명 이내의 평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재적 회원은 제27조제1항의 임기 시작 전년 12월 1일 현재의 수로 한다.
- ⑥ 회원은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또는 결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결원 사유 발생시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① 평의원의 선거권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수에 있다.
- ② 평의원의 피선거권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재직 3년 이상의 평교수에 있다.
- ③ 평교수라 함은 교무위원 및 본부 부처장급 이상의 보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27조(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3월 1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평의원직의 상실) 평의원이 임기 중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29조(보수) 평의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30조(소환)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 2 절 임 원

제31조(임원) 평의회는 임원으로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간사 약간 인을 둔다.

제32조(임원의 선출 및 임무)

- ①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전체교수회 및 평의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절 위 원 회

제33조(상임위원회)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① 평의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학사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복지위원회
- ②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어 상임위원회 업무를 총괄케 하며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호선에 의한다.
- ③ 원활한 평의회 활동을 위하여 학사행정에 관한 정책연구와 자료조사를 담당하는 유급 전 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특별위원회) 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이 아닌 회원도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

- ①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평의회에 보고한다.

제 4 절 권 한

제36조(심의 · 의결권)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① 인사에 관한 사항
 1. 교수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사항
 2. 총장 및 전체교수회 회장 선출 관리
 3. 총장임명의 비선출직 교무위원급 보직교수 임명동의권
- ② 기획에 관한 사항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재정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승인권 및 결산감사권에 관한 사항
 2. 중요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학사에 관한 사항
 1. 대학의 연구 및 교수환경에 관한 기본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기본사항
- ⑤ 복지에 관한 사항
 1. 교수·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수 경조에 관한 사항
 3. 장학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업무 감사권) 평의회는 대학 당국의 인사, 재정 및 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출석,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주요 보직자의 해임 및 전보 건의권)

- ① 평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총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처장 및 사무국장의 보직해임 및 전보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 해임 및 전보 건의안의 의결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총장의 건의권)

- ① 총장은 평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붙여 평의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② 평의회는 총장의 서면 통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재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재통고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재통고된 의결사항에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교수회를 소집하여 그 이의에 대한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평의회에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의 이의에 대하여 전체교수회가 의결로서 찬성하면 평의회의 그 의결사항은 당연히 폐기된다.

제40조(총장의 평의회 출석)

- ① 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장의 평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평의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직원 및 학생대표의 평의회 출석)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는 필요한 경우 평의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42조(활동내용의 공개)

- ① 평의회는 활동내용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평의회는 매학기 1회 이상 활동내용을 단과대학 교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회 의

제43조(정기회) 평의회는 매월 정기회를 개최한다.

제44조(임시회) 평의회는 의장,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45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평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46조(재정)

-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한다.
- ② 본회는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규 정 의 개 정

제47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부산대학교 재적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1989년 3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회칙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전체교수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회칙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및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이회는 본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 및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전체교수회 개최 및 회장의 선출관리를 위하여 현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에서 각 2인씩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6조 이 회칙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이 회칙은 199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1990년 5월 10일 개정).

제8조 이 회칙은 개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2년 12월 8일).

제9조 제2기 회장 임기만료일은 1993년 2월 28일로 한다.

제10조 이 회칙은 개정이 확정된 날(1998년 12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회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 회칙은 개정이 확정된 날(2007년 1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이 회칙은 개정이 확정된 날(2008년 12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 회칙은 개정이 확정된 날(2009년 12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이하“회칙”이라고 한다)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회(이하“평의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의 의사일정, 안건, 기타 토의사항에 관한 자료를 각 평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안건의 상정) 안건은 임원의 제안,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평의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다만 평의회의 결의로 채택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제4조(표결)

-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선포 후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토의할 수 없다.
- ②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되 평의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회) 회칙 제33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 상임위원회의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위원회: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폐, 교수회보의 발간 그리고 평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학사위원회: 대학의 연구와 교수환경, 교수와 직원의 인사,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재정위원회: 예산편성 및 결산, 중요기관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복지위원회: 교수와 직원의 처우개선, 장학 및 각종 복지 그리고 교수경조에 관한 사항

제6조(특별위원회)

- ① 평의회 산하에 대학정책개혁 특별위원회, 교권보장 특별위원회, 여성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평의회는 총무기획, 학술연구, 재무복지, 국제정보 및 문화홍보간사를 둔다.

제8조(회의록)

- ① 총무기획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 및 결석 평의원의 성명
 3. 참고 출석인의 성명 및 직위
 4. 제반 보고 사항
 5. 의결사항(동의자 성명)과 표결 결과
- ②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총무기획간사 및 출석의원중 1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다음 회의때 총무기획간사가 이를 낭독하며,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평의회의 결의를 얻어 정정한다.

제9조(교수회보)

- ① 평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교수회보를 발간한다.
- ② 교수회보의 편집위원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문화홍보간사로 한다.

제10조(경조) 회칙 제36조 제5항에 의한 경조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① 퇴직 및 전보 : 재직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만원
재직 10년 이상 : 10만원
- ② 정년퇴직 및 본인사망 : 금 5돈중
- ③ 직계존속사망 : 10만원
- ④ 배우자 사망 : 10만원

제11조(시행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은 평의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회 결의에 따른다.

제2조 이 시행세칙은 1989년 5월 30일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시행세칙 통과 전에 결의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해 결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안은 개정안이 확정된 날(1998년 12월 3일)로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이 확정된 날(2002년 10월 22일)로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이 확정된 날(2007년 3월 2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록 13)

순천대학교 학칙

제3장 교수회 등

제1절 교수회

제16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제16조의 2(전체교수회)

- ① 전체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전체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교수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3. 전체교수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③ 전체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전체교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 ④ 전체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단과대학교수회)

- ①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에 소속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학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거나 단과대학교수회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
 - 4.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사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⑤ 단과대학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전공), 학과장회의 심의로 처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6조 및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구성)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이하 “교수”라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교수, 기타 비정규 교수는 제외한다.

제3조(임원)

- ① 교수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 사무처장 1인을 둔다.
- ②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평의회에서 임시의장단을 선출한다.
- ⑤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교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임원은 이 대학의 어떠한 보직도 겸할 수 없다.
- ⑧ 총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임원은 총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후 1주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4조(의장의 자격 및 선출)

- ① 의장은 부교수, 부의장은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동반출마당선제(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여, 교수회에서 무기명·직접·비밀투표로 재적교수(1개월 이상 장기출장·휴직 중인 교수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조와 차점조에 대하여, 최고 득표조가 2개조 이상이면 최고 득표조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 득표조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입후보조가 1개조인 경우 그 선출은 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입후보조가 없는 경우 재적교수 10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추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 선출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개선 및 보선)

-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② 의장의 임기 중 사임·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의 임기

-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한 의장·부의장의 선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장만을 보선할 경우에는 제4조의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2. 부의장만을 보선할 경우에는 의장이 1인을 추천하여 평의회에서 무기명·직접·비밀 투표로 재적평의원 (1개월 이상 장기출장·휴직 중인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의장·부의장을 동시에 보선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④보선으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사무처장의 선출)

- ① 사무처장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삭제<개정 2005. 1. 5.>

제3장 회의

제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교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교수회 구성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회의)

- ① 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② 의장은 교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④ 임시총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교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⑤ 교수회의 심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⑥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회의공개)

-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을 제한할 수 있고, 방청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교수평의회

제10조(설치) 학칙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둔다.

제11조(심의사항) 평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2. 의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제12조(구성 및 임원)

- ① 평의회는 교수회의장 1인·부의장 1인 및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평의회 임원은 교수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이 겸임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교수회에서 무기명·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의 평의원 수는 교수회 구성원 10인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4조(개선 및 보선)

- ① 각 단과대학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당 단과대학은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15조(겸직금지) 대학원장·대학본부 처장 및 단과대학장은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6조(회의)

- ① 회의는 총장·의장 또는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평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7조(회의공개) 평의회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

- ① 평의회에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 ③ 평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19조(세칙) 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평의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0조(재정)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이 대학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행정지원) 교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요구)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03. 10.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제정 당시의 교수회 임원 및 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은 제3조 제6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10일로 한다.
- ② 교수회 관련 학칙 개정 공포일(2003. 5. 23)로부터 이 규정 공포 전의 교수회 및 평의회의 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평의회 심의를 거친 순천대학교 교수평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06일
순천대학교교수회의장

순천대학교교수평의회운영세칙

제정 2003. 10. 29
개정 2004. 4. 14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6. 8
개정 2005. 6. 22
개정 2009. 10. 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순천대학교 교수회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교수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평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평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속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평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장, 본부처장 임명 동의
3.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 제규정의 제정, 별표1에 의한 규정의 개정 및 이들 규정의 세칙·지침·따로 정하는 사항 등의 제정 및 개정(개정 2004. 4. 14)
5. 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전공 및 과정의 설치와 폐지
6.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4. 4. 14)
8. 대학시설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교수인사 및 교수공채의 이의신청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0. 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1. 신규 대학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2. 기성회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4. 4. 14)

제4조(안건상정)

- ① 의장은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 평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평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의장이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의기간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 ④ 대학제규정의 제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의장은 부의장,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3인 및 소관 분과위원회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안건심의)

- ① 평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의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다. 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 또는 의장이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 ② 총장 해임건의안 및 의장 불신임안에 관한 사항은 평의회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교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단,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았을 경우 평의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대학원장, 본부처장의 해임 건의안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총장 또는 의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평의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제5조 제②항과 제③항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결과 처리는 교수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⑤ 의장 및 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동일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제6조(표결)

- ① 표결은 거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의 제의 또는 평의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제7조(안건송부) 의장은 평의회에서 심의된 학칙안과 규정안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결 사항을 즉시 총장에게 송부한다.

제8조(위원회)

- ①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과 사무처장은 이를 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및 설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때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9조(분과위원회 소관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무·학생분과위원회
 - 가. 교무처 소관 사항
 - 나. 학생처 소관 사항
 - 다. 대학원 소관 사항
 - 라. 기타 사항
2. 연구기획분과위원회
 - 가. 연구기획처 소관 사항
 - 나. 연구기관 소관 사항
 - 다. 부속기관 소관 사항
 - 라. 기타 사항
3. 예산·결산분과위원회
 - 가. 사무국 소관 사항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 라. 대학 구성원 복지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사항

(개정 2005. 6. 22)

제10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① 대학원학칙 및 이 대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의장, 평의원 재적 4분의 1이상으로 발의하여, 평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5. 6. 22)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의장 및 부의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 각 단과대학 평의원들이 단과대학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 ② 의장 및 부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갖는다.
 - 1. 선거일시 및 장소의 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투표 및 개표 관리
 - 4. 이의 심사 및 판정
 - 5. 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토론회
 - 6. 투표지의 유효여부 판정
 - 7.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2조(면책특권)평의원은 평의회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대해서 면책특권을 갖는다.

제13조(회의록)

- ① 평의회는 사무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회의록은 심의 가결된 내용만 기록하며 폐회 전에 낭독하여야 하고,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평의회나 위원회의 의결로 정정한다.
- ③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후 공개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추진 및 활동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수회 임원 및 교수평의원의 업무추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교수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6. 22)

제15조(심의사항 조정 및 수정)

- ① 의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조정을 요구할 경우 평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총장의 정책 사항이어야 한다.(개정 2005. 6. 22)
- ② 교수평의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장은 의미가 변하지 않은 자구(오자, 탈자 등)를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세칙 외 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개정 2005. 6.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수회 관련 학칙 개정 공포(2003. 5. 23)일로부터 이 세칙 공포 전의 평의회 사무처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규정

순서	규정명	순서	규정명
1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11	교원업적평가규정
2	대학원학사운영및 학위수요규정	12	강사료지급규정
3	교수회규정	13	발전연구팀운영규정
4	교원인사규정	14	학술교류협력에관한규정
5	총장선출규정	15	학술연구비관리규정
6	명예교수규정	16	간접연구비관리규정
7	연구교수규정	17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규정
8	겸임교원임용규정	18	부속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9	객원교수규정	19	학술연구교수규정
10	석좌교수규정	20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규정 중 개정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심의 요구하는 규정 및 평의원 재적 4분의 1이상이 심의요구하는 규정은 교수평의회 심의 대상 규정이 된다.			

부록 14)

안동대학교학칙

제13조(교수회 평의회)

- ① 평의회는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원으로 구성한다.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평원은 평교수 중에서 선출하되, 그 수는 단과대학별 및 전문대학원 재적교수의 15% 내지 2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 ② 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한다. 평의회의 임시의장은 평의원 중 최연장자로 한다.
- ③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학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 ④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상위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2. 교육 기타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3. 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⑤ 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교수회평의회규정

제 정 2005. 9. 2. 규정 제 483호

1차개정 2006. 9. 18. 규정 제 526호

2차개정 2007. 11. 21. 규정 제 5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학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전교 교수회의 대의기구인 안동대학교 교수회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및 권한)

- ① 학칙 제13조 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② 교원의 교권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③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협조와 회의 참석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의 또는 처리사항을 전체 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평의원

제3조(평의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선거권자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피선거권자는 안동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 평교수로 한다. 단, 학부(과)장을 제외한 보직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④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 6인당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6인 미만일 경우 1인을 추가한다.
- 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결위된 경우 2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 전임 평의원의 잔여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평의원의 권한과 임무)

- ① 평의회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평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재적 평의원 2/3의 찬성으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진은 즉시 해산한다.
- ④ 평의회 내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개정 2007. 11. 21)

제5조(평의원의 자격 상실)

평의원이 제3조 제2항의 보직에 임명된 경우, 혹은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평의원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둔다.(개정 2007. 11. 21)

제7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 ① 의장후보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의장, 부의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 시에는 과반수를 득해야 한다.
- ④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원진이 해산된 경우 임시의장은 임원진의 해산이 결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하며, 새롭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선출임원이 사퇴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 임원을 선출하며, 새롭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11. 21)
- ⑥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은 의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 11. 21)

제8조(임원의 임무)

-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되 제1부의장은 교무학생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고 제2부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며 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의장 유고시 제1, 제2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1. 21)
- ③ 감사는 평의원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전체 교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 11. 21)
- ④ 사무국장은 회의준비, 문서처리, 기록유지,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정책국장은 기획, 정책개발, 홍보, 회보 발간 및 각종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1.21)

제4장 조직

제9조(구성)평의원회는 총회, 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인 교무학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11. 21)

제10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 2회 매 학기 초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안동대학교학칙 제13조 제3항의 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정책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의

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07. 11. 21)

제11조의 2(상임위원회)(신설 2007. 11. 21)

- ① 상임위원회는 교무학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평의회 정기 및 임시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교무학생위원회는 학사, 교원의 교권, 후생복지 및 기타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③ 기획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운영, 발전 및 기타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 ① 특별위원회는 대학의 교육발전 및 기타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무

제13조(예산) 평의원회의 예산은 안동대학교 예산에 편성한다.

제14조(회계년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15조(개정) 이 규정은 총장, 평의회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개정 2007. 11. 21)

부 칙

-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제3조 제⑤항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차기 평의원부터 적용하되 차기 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11. 21)

부록 15)

전 남 대 학 교 학 칙

제14조(평의원회)

- ① 이 대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는 주요 보직교수와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대학원·학부(과) 및 부속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
 2. 학칙의 개정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5. 대학의 주요 발전계획, 시설 및 환경
 6. 교권과 후생복지
 7. 총장, 평의원회 의장,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④ 평의원회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칙 개정안은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전남대학교 평의원회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전남대학교 평의회회 규정

제정2002. 4. 26. 제822호	개정2007. 8. 1. 제1106호	개정2009. 7. 30. 제1205호	
----------------------	----------------------	-----------------------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평의회는 학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진리·창조·봉사의 본 대학교 교육 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① 평의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각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 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 및 직원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은 학(원)장 및 처장을 제외한 교수로 하며, 각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평의원 수는 재직교수 50명당 1명씩으로 하되 재직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 ③ 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은 처장 2인으로 하며, 직원 평의원은 4인으로 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 제외) 임기중 궐위된 평의원의 후임 평의원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기능)

- ①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부(과) 및 부설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
 2. 학칙의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5. 대학의 주요 발전계획, 시설 및 환경
 6. 교권과 후생복지
 7.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에 대한 임명동의
 8. 총장, 평의회 의장, 재직 평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회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 교직원의 출석요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평의회는 대학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3인 이상의 평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사안을 법령, 학칙 및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④ 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생활/신용협동조합회계 등의 운영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 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성회계 프로그램 간 예산전용과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 ⑥ 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⑦ 평의원회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제시 요구에 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원) 평의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평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임기중 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의 장 1인
2. 부의장 1인
3. 감 사 2인
4. 기획간사, 서기간사, 총무간사 각 1인

제 6 조 (임원선출)

- ① 교수협의회 회장인 평의원을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 ② 부의장 및 감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 ③ 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기획간사, 서기간사, 총무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⑤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직무)

-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원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의장은 업무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감사는 평의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매 학년초 정기회의 때 이를 보고한다.
- ④ 기획간사는 회무를 기획조정하고 의장을 보좌한다.
- ⑤ 서기간사는 회의록의 정리, 보관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총무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위원회) 평의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 ①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기획간사, 서기간사, 총무간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수협의회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의뢰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기타 평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항)

- ①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

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②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교무 및 학생 위원회
 - 가.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 나. 교직원 인사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2. 재정 및 복지위원회
 -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대학구성원의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회계의 보고에 관한 사항
 - 3. 기획 및 시설 환경 위원회
 - 가. 대학발전의 기본계획
 - 나. 총학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라.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마. 타 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4. 산학·연구 및 조정위원회
 - 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
 - 나.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관한 사항
 - 다. 교내 구성원 이견 조정 및 현안 문제

제 11 조 (특별위원회)

- ①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12 조 (전문위원)

- ① 각 상임위원회에 평의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제 13 조 (간사회)

- ① 평의원회 업무 협의, 각 위원회의 협조체제 구축, 평의원회 활동의 홍보와 대학 구성원의 여론 조사활동을 위하여 간사회를 둔다.
- ② 간사회는 부의장, 기획간사, 서기간사, 총무간사와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 14 조 (회의)

- ①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② 정기회의는 년 2 회 매학기 초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3인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본회의의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칙의 변경은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 (의안발의)

- ① 3인이상의 평의원 또는 총장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의안의 발의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심의결과 통보)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17 조 (평의원 교체)

- ① 각 대학 교수회의는 재직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이상의 의결로 해당 평의원을 불신임 교체할 수 있다.
- ② 평의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혹은 평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 대학장에게 당해 평의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9 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2. 4. 26.)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평의원회 구성 및 활동은 1987년 8월 25일의 평의원회 규정을 승계한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0.)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6)

창원대학교 학칙

제4절 교수회 및 평의회

제22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로 하고, 전체교수회에는 심의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 ③ 교수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평의회)

- ① 이 대학교에 평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평의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창원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6. 6.26(규정 제8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학칙 제23조에 의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조직 및 행정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대학평의위원회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 및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평의원 1/5 이상이 요구하는 중요사항
-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원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대표 34인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2. 직원평의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대표 5인
3.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4인
4. 총장지명평의원은 총동창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지명하는 교외인사 3인

제4조(평의원의 임기 등)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이 휴직 또는 휴학하거나 교원평의원이 대의원직을 잃거나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 6월 이상 파견·출장 중인 때에는 평의원의 지위를 잃는다.
- ③ 제2항의 사유 및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평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 ① 대학평의위원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의장은 교수회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교수회부의장 1인과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부의장 1인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면한다.
- ③ 의장은 대학평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의원 1/5 이상이나 총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④ 회의의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총장 또는 평의원 1/5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대학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학칙의 개정
 2. 대학평의원회규정의 개정
 3. 총장 또는 평의원 1/2 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결과의 통지와 재심의)

-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여 결의한 사항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안에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안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원회 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교무학사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기획발전위원회
- ③ 대학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이 아닌 사람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대학평의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설명과 자료제출)

- ①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학(원)장, 처·국·단장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총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장, 처·국·단장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등)

-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의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의거 회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학내 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등)

- ①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예산을 지원한다.
- ② 대학평의원회의 행정업무는 교무처 교무입학과에서 담당한다.
- ③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인사 및 평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회의비 기타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6. 6.26. 규정 제853호)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평의원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주일 안에 선출한다.
- ③ 의장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부의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최초의 평의원의 임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창원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세칙

제정 2008. 9. 9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창원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이하 “평의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평의회의 운영)

- ① 의장은 평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상정한다.
- ② 총장이 평의회에 심의 요청한 안건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
- ③ 총장은 평의회의 심의 의결을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총장 또는 평의원 2분의 1 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 평의회는 재심의를 결과를 의장이 총장에게 통지한 후에는 재심의를 할 수 없다.
- ⑥ 평의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① 평의회의 운영위원회는 평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 ② 평의회의 운영위원회는 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의회의 회의 일시
 2. 평의회의 회의 의안
 3. 평의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4. 평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 ① 평의회의 교무학사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회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가운데 교무처, 학생처, 대학원 및 관련 부속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평의회의 재정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회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가운데 사무국의 소관사항 및 예결산과 재정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평의회의 기획발전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회규정 제2조 제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가운데 기획처, 산학협력단, 도서관, 정보전산원 및 관련 부속기관, 연구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평의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과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평의회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의장은 평의회의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 가운데 평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특정한 안

건에 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만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이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결정은 평의원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 ① 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평의원회는 주요한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사진행, 회의록 등)

- ① 평의원회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해당 위원장의 심의결과보고를 청취한 후에 심의 의결한다.
- ②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회의 시간에 정규 수업을 진행 중인 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장 중인 자와 입원치료 및 그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계상한다.
- ③ 평의원회의 표결은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 표결하고, 의장이 표결결과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④ 평의원회의 의안에 대한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그 뜻을 선포하여야 한다.
- ⑤ 평의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3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 및 결석의원 성명
 3. 출석참고인의 직, 성명
 4. 보고사항
 5. 안건토의에 관한 내용
 - 가. 회의에 부의된 의안 제목
 - 나. 토의의 주요내용
 6.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의 설명
 7. 표결결과와 의결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⑥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차기 회의시에 열람하여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정정한다.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평의원회의 본회의의 진행과정을 녹음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의 의결이 있기 전에 결의된 것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 본다.

부록 17)

충북대학교 학칙

(전부개정 2009. 2. 27. 규칙 제837호)

(개정 2010. 7. 1. 규칙 제897호)

제 4 장 평의원회, 교수회

제109조(평의원회)

- ① 이 대학교에 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0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에 대학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수회 회장은 대학 교수회 및 전교 교수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 ④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 ⑤ 교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⑥ 교수회는 재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3. 학교 재정에 관한 사항
 - 4. 학칙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⑧ 그 밖의 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충북대학교 교수회 학칙기구화 (2003년 11월 10일 규칙 공포)

충북대학교규칙 제633호

충북대학교학칙중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1월 10일

충북대학교 총장

충북대학교학칙중개정학칙

충북대학교학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중 “조교수”를 “전임강사”로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수회 회장은 단과대학 교수회 및 전교 교수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⑤교수회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운영) 기타 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82조제4호에 관한 규정은 2004. 1. 1부터 적용한다.

충북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정 2005. 3. 30.
1차 개정 2007. 3. 28.
2차 개정 2008. 3. 26.
3차 개정 2009. 4. 15.
4차 개정 2010. 10.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학칙 제110조에 근거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며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회는 충북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라 하고, 사무소는 충북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회원) 교수회는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로 구성하며, 전체 교수회에는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교수회

제5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대한 사항
2. 총장후보자의 선출, 총장 불신임 및 중간평가에 대한 사항
3. 교수평의회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
4. 학칙 제·개정의 발의에 대한 사항
5. 교수회의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
6.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
7. 교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
8. 평의회에서 부의한 사항
9. 총장이 부의한 사항
10. 교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임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3. 간사장 1인

4. 간사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자격) 학장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학과(부)장 및 연구소 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회원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
- ③ 부회장과 간사장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며, 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부회장과 간사의 궐위되었을 경우 회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과 간사장을 임명한다.
-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과 궐위로 인하여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총무, 기획, 섭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교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중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
 3. 평의회의 요청이 있는 때
 4.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1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전체회원(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평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총회의 출석회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의 불신임은 총회에서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감사의 선임 및 직무)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권위 시에는 평의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전 교수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장후보자의 선출)

- ① 총장후보자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 ② 총장후보자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총장 불신임과 총장 중간평가)

- ①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교수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 ②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총장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

- ① 교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7조(규정 개정) 교수회의 규정 개정은 교수평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교수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하며 12조 ①과 ②를 준용한다.

제3장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

제18조(구성)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은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두며, 회칙은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기능)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장후보자 및 전문대학원장의 선출에 대한 사항
2.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
3.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장과 평의원의 선출에 대한 사항
4.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장과 평의원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

5.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
6. 기타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장 교수평의회

제20조(구성)

- ① 평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임원과 단과대학 교수회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제외한다.
- ② 학장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학과(부)장 및 연구소 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평의원의 수는 평의원 선출일을 기준으로 각 대학 및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50인 미만은 2인
 2.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인
 3. 100인 이상은 4인
- ④ 평의회에는 교학, 법제, 재정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1조(평의회의 소집)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
3.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22조(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 가. 교수 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나. 총장 및 교수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다. 대학원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 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학칙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대학 및 대학원 운영, 기획에 관한 중요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중요 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에 관한 사항
 - 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교수 환경에 관한 기본 사항
5. 복지에 관한 사항
 - 가. 교수의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장학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학내 구성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 가. 교수회에서 위임한 사항
- 나.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다. 평의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라.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마. 총장이 임명하는 학장급 보직자의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 ① 평의회의 운영위원회는 교수회 임원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한다.
- ② 평의회 운영위원회는 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4조(의견 청취권) 평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중요 안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평의회의 의결 및 운영)

- ① 평의회의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평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의결정족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평의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배포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평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평의회는 전체회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 ⑥ 평의회는 그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26조(재정)

- ① 교수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 ②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8) 교수회/평의원회 학교별 지원 내역

학교명	예산지원 (연간)	금액	강의시수
강릉원주대	3,500만원	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감면 없음
공주대	1억4천만원	회장 월 120만원, 사무국장 월 60만원, 간사 월 20만원	회장 6시간, 사무국장 3시간
순천대	8,000만원	의장 120만원, 부의장 80 만원, 사무처장 70만원	의장 3시간, 부의장 4시 간, 사무처장6시간 (책임 시수)
안동대	4,054만원 (수당포함)	의장 월 80만원, 부의장 2명 월 30만원씩	학부 대학원 포함 6시간
창원대	5,500만원 (수당제외)	의장 100만원, 부의장 3인각 50만원, 사무국장 1인 50만원	의장 3시간, 부의장 및 사무국장 6시간
경북대	2억2천만원 (수당포함)	의장 120만원, 부의장 60 만원, 사무처장 50만원, 사무부처장 50만원	의장 3시간, 부의장 및 사무(부)처장 6시간
전북대	1억2천만원	회장 100만원, 사무처장 50만원, 부회장 2인 각 30만원, 감사 2인 각 30만원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주당 3시간 감축
충남대	1억 (수당포함)	회장 80만원, 부회장 40 만원, 상임운영위원 3~4명 25만원, 기타 평의원은 회 의 참석 시 회의비수당 약 간액	회장 3시간, 부회장 6시 간, 상임운영위원은 감 축 없이 9시간
충북대	9,000만원	회장 월100만원, 부회장 2인 월 50만원, 간사장 1 인, 기획간사 1인, 총무간 사 1인 각 월 40만원	회장 3시간, 그 외 부회 장 ~ 간사 주 6시간